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연금 가치주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
- KB 연금 성장주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
- KB 연금 성장주5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KB 연금 국내채권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채권)
- KB 연금 인덱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51조의4(집합투자기구의 전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5. 생략</p> <p>6. KB 연금 코차이나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 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7. ~ 9. 생략</p> <p>④~⑤생략</p> 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<p>제51조의4(집합투자기구의 전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5. 생략</p> <p>6. KB 연금 코차이나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 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7. ~ 9. 생략</p> <p>④~⑤생략</p>

- KB 연금 단기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채권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~③생략</p>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~③좌동</p> <p>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 <p>※ 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’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</p>

	<p>제51조의4(집합투자기구의 전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5. 생략</p> <p>6. KB 연금 코차이나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 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7. ~ 9. 생략</p> <p>④~⑤생략</p>	<p>제51조의4(집합투자기구의 전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5. 생략</p> <p>6. KB 연금 코차이나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 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7. ~ 9. 생략</p> <p>④~⑤생략</p>
<p>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</p>		

- KB 연금 국내외채권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채권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~③생략</p>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~③좌동</p> <p>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<u>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 <p>※ 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’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</p>
	<p>제51조의4(집합투자기구의 전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5. 생략</p> <p>6. KB 연금 코차이나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 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제51조의4(집합투자기구의 전환) ①~②생략</p> <p>③ 1. ~ 5. 생략</p> <p>6. KB 연금 코차이나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7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8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 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
	7. ~ 9. 생략 ④~⑤생략	7. ~ 9. 생략 ④~⑤생략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
투자설명서	수익률 변동성: 3.07%	수익률 변동성: 3.69%
	※ 정기갱신(기타비용/증권거래비용,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/운용실적 등 업데이트)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포함	

- KB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- KB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- KB 원자재 특별자산 자투자신탁(상품-파생형)
-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~③생략 ④ 1. ~ 2. 생략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4. ~ 7. 생략 ⑤~⑨생략 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~③생략 ④ 1. ~ 2. 생략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4. ~ 7. 생략 ⑤~⑨생략 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

- KB스타 미국 S&P5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-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
- KB스타 개인용 MMF P-101호(국공채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생략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·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. <u>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

		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		※ ‘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’ 시행에 따른 내용 반영
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~③생략 ④ 1. ~ 2. 생략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4. ~ 7. 생략 ⑤~⑨생략	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 ①~③생략 ④ 1. ~ 2. 생략 3. KB스타 차이나 H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에서 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(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)에 전환처리 한다.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4. ~ 7. 생략 ⑤~⑨생략	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) 변경		

2. 변경일: 2020년 10월 23일(금)